

I. 기본정보

기관명	비룡노인전문요양원	대표자	이세희
설치일자	1992.12.31	전화번호	T.061) 351-1100 / F.061) 351-2548
급여종류	시설급여	장기요양기관번호	14687000001
소재지	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237-15		
이용대상	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.		

II. 이용정원 및 이용자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

1. 이용정원 :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은 84명이다.(인지지원등급은 정원 외 5명 추가 가능)
2. 이용자 모집방법 :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, 기관 홈페이지, 지역신문, 지인소개, 대상자 방문상담,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.

III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계약목적	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시설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계약기간	① 시설과 이용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 ②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의해 연간단위로 계약하되, 시설과 이용자 간의 계약해지 의사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된다.(등급이나 감경을 변동 시 재계약)
계약해지	① 이용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계약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 및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③ 입소비용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거나 자주 지연시킴으로써 지불능력이 없으며, 시설과 이용자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칠 경우 ④ 기타질환 발생 등으로 장기입원조치나 전원 시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히 할 경우 ⑤ 건물,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, 중대한 과실로 오손, 파손, 멸실 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에서 인정할 경우 ⑦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⑧ 질병이나 상해로 장기 입원치료를 요할 시 시설과 이용자의 상호 동의에 의한 경우 ⑨ 기타 본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	① 이용자가 안전한 시설생활을 조성 및 제공받고 있는지,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. ② 시설에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. ③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가 있으며,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시설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 ⑤ 이용자가 병원 입·퇴원 시에는 입·퇴원 처리 및 비용 등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.
급여비용	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한 이용자 부담금은(해당연도 시행 기준에 따름)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한다.
배상책임	급여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.
운영규정개정	운영규정의 개정은 시설 실무자, 자체평가, 수급자 의견 수렴에 의하여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. 개정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절차는 별도로 정하여 진행하기로 한다.

IV.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

운영규정 참조	시설 내 비치되어 있으므로 상시 열람가능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V. 2025년 추가

구분	종류	단위	1등급	2등급	3~5등급	비고
시설 급여 시설	요양 시설	1일당	90,450	83,910	79,240	<본인부담금> 일 반 : 20% 의료수급권자 : 12%, 8% 기초수급자 : 무료
		30일기준	2,713,500	2,517,300	2,377,200	
		본인부담금	<542,700>	<503,460>	<475,440>	
		비급여(식대)	225,000	225,000	225,000	

VI. 비급여

항 목	금 액(단위:원)
식사비	2,000원
간식비	1,500원